

Yeosu Web Contents

2024년 02월 21일 20시 23분



목차

목차	2
조선시대	3
정의	3
개설	3
체결경위	3
조약/회담내용	3
결과	4
참고문헌	4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				

- 조선시대
- 계해약조
- 임진왜란
- 철새방비시설
-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

정의

1443년 조선과 일본 간에 맺은 무역 조약

개설

1419년(세종 1) 대마도를 근거지로 하여 말썽을 부리던 왜인들을 정벌한 후, 한동안 조선·일본 사이의 왕래가 중단되었으나 대마도주의 간청으로 다시 부산포(釜山浦)·내이포(內伊浦)·염포(鹽浦) 등 삼포(三浦)를 개항하여 무역과 근해에서의 어획을 허락하면서 후환을 염려하여 종전에 비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 조약을 체결하였다.

체결경위

고려 말부터 계속되던 왜구의 침입에 대해 조선은 1419년 그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뒤 대마도와의 통교를 중단했다. 물품 부족으로 곤란을 느낀대마도주(大島守) 종정성(宗正成)은 계속 통교를 간청했고, 이에 1426년(세종 7) 삼포(三浦)에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그 곳에 한해 숙박과 무역을 허락했다.

입국 왜인에게 도서(圖書)·서계(書契)·행장(行狀)·노인(노인) 등의 증명을 지참토록 했고, 세견선(世堅船)과 사송선(沙松船)의 제한과 윤박법(潤박법)·군박법(軍박법)의 실시로 질서를 유지하게 했다. 1443년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무역침지중추부사 변효문(邊孝文)과 대마도주 종정성이 양국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회담내용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세견선은 1년에 50척으로 한다.
- 둘째, 선원 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에게는 식량을 지급한다.
- 셋째,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날짜는 20일로 한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監守人)은 50일로 정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 넷째, 고초도(高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地稅浦慢戶)의 허락을 받은 뒤 고기를 잡고, 이어서 어세(魚稅)를 내야 한다.
- 다섯째,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稅沙米頭)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한한다.

위 약조 내용 중 네번 째에 해당하는 고초도는 지금의 여수시 거문도를 가리킨다.

결과

세종은 왜인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먼저 위세를 떨쳐 그들을 정벌한 다음, 다시 은정()을 베풀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왜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후부터 본국으로 귀환 할 때까지 비용은 조선 측이 부담했는데, 그 접대비용과 세역미두가 너무 많아 재정 긴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긴축 정책은 앞서 마련된 법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예외 상황이 너무 빈발해서, 왜인들은 이를 위반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이후 삼포왜란()의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여천시지] (여천시문화원, 1997)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